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사무관리규정(2002.12.26 대통령령 제17811호) 및 사무관리시행규칙(2003.7.14행정자치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 관리하여 시대 변천자료로 활용(안 제6조제2항)
- 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이 재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변조했다는 민원을 제기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에 대한 사항 명문화(안 제6조제4항)
- 다. 전자이미지공인을 일반공인처럼 부산광역시사하구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내실화 도모(안 제7조)

3. 관계법령

-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시행규칙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이 2002. 12. 26자로 개정되어 2004. 1. 1부로 시행토록 되어 있던바, 이와 관련된 관인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이 종정과 상당부분 개선보완 되었기에 우리구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현행 사하구 공인공례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금번 사무관리규정 개정시 개선, 보완 내용과 함께 세부사항은 시행 규칙에 유보하고, 공인의 목적, 공인의 종류, 등록, 폐기, 공고등 주요 사항만 조례에 명시하므로 조례를 단순명료화 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현 조례 제1조(목적)의 각종행정기관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소속행정기관”속에 포함시켜 단순화 하였고.
 - 조례안 제2조는 사무관리규정 제35조의 내용에 맞추어 규정하였을 뿐아니라, 관인을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청인과, 일반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 보조기관의 명의로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하였으며,
 - 현 조례 제3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조례안 제3조에 전자 이미지 공인을 추가하여 특수공인으로 변경 규정하였고,
 - 현 조례 제4조의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 조례안 제4조에 규격의 상한선만 명시하고, 글씨종류등은 규칙에 유보하였음.
 - 조례안 제5조(등록)를 신설하여, 공인은 반드시 등록대장에 등록후 사용토록 명시하였으며,

- 조례안 제6조에는 현조례상 폐기공인을 소각등의 방법으로 폐기토록 한것(현조례제11조)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역사적유물로 보존관리 하도록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한 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이 특이한 사항이며
 - 조례안 제7조에는 현 조례상, 공고에서 제외되었던 전자이미지 공인을 삽입
 - 조례안 제8조에는, 현조례에 있던 공인의 글씨 및 규격(제4조), 각인(제5조), 공인대장(제7조), 공인의 사고보고(제12조), 공인의 관수자(제13조), 관수방법(제14조), 공인의 날인방법(제15조)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유보한바.
-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공인조례등을 참작하여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개정 시행할 공인조례시행규칙안도 검토한바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됨.

2003. 1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